|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호  <국무원의 외국인투자 성장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국발[2017]39호), 재정부 등 4 부처의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88호, 이하'<통지>'로 약칭)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이하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지> 제2조 제(4)호에서 경영활동이라 함은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제활동 중의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되는 경영활동을 포함한다.  (1)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2) 연구개발 활동;  (3) 건설공정 투자 또는 기계설비 구매;  (4) 기타 경영활동.  외국인투자자는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를 회수하기 전 또는 <통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및 보충납부하기 전에 <통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거래증거, 재무회계처리 데이터 등 자료를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관할 세무기관은 지(시)[地(市)]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통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통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보충납부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협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관련 이익배당금 지급 시점에 유효한 조세협정만 적용이 가능하다. 후속조세협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후속조세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3.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를 작성하여 이익배당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소급적용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와 관련 계약서, 지급증빙,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 활동 관련 서류 및 성급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를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보충납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공제•납부 보고표>를 작성하여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기업은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제출한 서류•정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결과가 확인된 후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정보가 온전하고 결여 사항이 없어야 한다.  (2) 이익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이익배당기업 관련 정보가 진실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5.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집행한 이익배당기업은 실제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기업이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공제•납부 보고표>;  (2)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이익배당기업이 보충적으로 작성한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은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를 제출받은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통지>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피투자기업(이하 '피투자기업') 관할 세무기관 또는 기타 관련 세무기관에 <비주민기업 세무사항 연락서>를 발송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6. 피투자기업 관할 세무기관 또는 기타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견된 경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주민기업 세무사항 연락서>를 통해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피투자기업이 잠정적 비과세 정책 적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관련 사실 또는 정보;  (2) 외국인투자자가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를 처분한 사실 또는 관련 정보.  7. 세무관리 과정에서 관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이익배당기업•피투자기업•지분양도인 등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인투자자의 잠정적 비과세 정책 적용과 관련된 서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이익배당기업이 이 공고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서류•정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말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제로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린 경우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당히 공제•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공제•납부하지 아니한 이익배당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추징한다.  9.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말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제로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린 경우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이 <통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중국 내 동일 주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가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와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투자 중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를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통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연된 법인세를 보충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이 외국인투자자의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세금 체납기간은 관련 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후 제8일(당일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11. 외국인투자자•이익배당기업은 이 공고에 규정한 관련 사항의 처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하는 경우 서면으로 된 위임장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이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608) (다운로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월 2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有关执行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号  　　根据《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国发〔2017〕39号）、财政部等4部委《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7〕88号，以下称《通知》）等有关规定，现对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以下称“暂不征税”）政策有关执行问题公告如下：  　　一、《通知》第二条第（四）项规定的经营活动具体包括下列与鼓励类投资项目相关的一项或多项经济活动：  　　（一）生产产品或提供服务；  　　（二）研发活动；  　　（三）投资建设工程或购置机器设备；  　　（四）其他经营活动。  　　境外投资者应在收回享受暂不征税政策的投资前或者按照《通知》第七条规定申报补缴税款时，向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提供符合《通知》第二条第（四）项规定的交易证据、财务会计核算数据等资料。主管税务机关对相关资料有疑问的，提请地（市）税务机关按照《通知》第六条规定处理。  　　二、按照《通知》第四条或者第七条规定补缴税款的，境外投资者可按照有关规定享受税收协定待遇，但是仅可适用相关利润支付时有效的税收协定。后续税收协定另有规定的，按后续税收协定执行。  　　三、境外投资者按照《通知》第三条规定享受暂不征税政策时，应当填写《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并提交给利润分配企业。  　　境外投资者按照《通知》第五条规定追补享受暂不征税政策时，应向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提交《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以及相关合同、支付凭证、与鼓励类投资项目活动相关的资料以及省税务机关规定要求报送的其他资料。  　　境外投资者按照《通知》第四条或者第七条规定补缴税款时，应当填写《中华人民共和国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并提交给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  　　四、利润分配企业应当按照《通知》第三条规定审核境外投资者提交的资料信息，并确认以下结果后，执行暂不征税政策：  　　（一）境外投资者填报的信息完整，没有缺项；  　　（二）利润实际支付过程与境外投资者填报信息吻合；  　　（三）境外投资者填报信息涉及利润分配企业的内容真实、准确。  　　五、利润分配企业已按照《通知》第三条规定执行暂不征税政策的，应在实际支付利润之日起7日内，向主管税务机关提交以下资料：  　　（一）由利润分配企业填写的《中华人民共和国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  　　（二）由境外投资者提交并经利润分配企业补填信息后的《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  　　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应在收到《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后10个工作日内，向《通知》第二条第（一）项规定的被投资企业（以下称“被投资企业”）主管税务机关或其他相关税务机关发送《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转发相关信息。  　　六、被投资企业主管税务机关或者其他税务机关发现以下情况的，应在5个工作日内以《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反馈给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  　　（一）被投资企业不符合享受暂不征税政策条件的相关事实或信息；  　　（二）境外投资者处置已享受暂不征税政策的投资的相关事实或信息。  　　七、在税务管理中，主管税务机关可以依法要求境外投资者、利润分配企业、被投资企业、股权转让方等相关单位或个人限期提供与境外投资者享受暂不征税政策相关的资料和信息。  八、利润分配企业未按照本公告第四条审核确认境外投资者提交的资料信息，致使不应享受暂不征税政策的境外投资者实际享受了暂不征税政策的，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依照有关规定追究利润分配企业应扣未扣税款的责任，并依法向境外投资者追缴应该缴纳的税款。  　　九、境外投资者填报信息有误，致使其本不应享受暂不征税政策，但实际享受暂不征税政策的，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依照《通知》第四条规定处理。  　　十、境外投资者持有的同一项中国境内居民企业投资包含已享受暂不征税政策和未享受暂不征税政策的投资，境外投资者部分处置该项投资的，视为先行处置已享受暂不征税政策的投资。  　　境外投资者未按照《通知》第七条规定补缴递延税款的，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追究境外投资者延迟缴纳税款责任，税款延迟缴纳期限自实际收取相关款项后第8日（含当日）起计算。  　　十一、境外投资者、利润分配企业可以委托代理人办理本公告规定的相关事项，但应当向税务机关提供书面委托证明。  　　十二、本公告自2017年1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附件：[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608)（下载）    国家税务总局  2018年1月2日 |